

제9조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본인부담금 내역

<2022년도 1월 기준>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 부담
	경감	8%, 12% 부담
	일반수급자	20 % 부담

[첨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요양 등급	기준일	급여항목			
		급여총액 (원)	일반(20%)	경감(12%)	경감(8%)
			공단부담	공단부담	공단부담
1 등급	30일	2,245,500	449,100	269,460	179,640
		(74,850*30)	1,796,400	1,976,040	2,065,860
	31일	2,320,350	464,070	278,440	185,630
		(74,850*31)	1,856,280	2,041,910	2,134,720
2 등급	30일	2,083,500	416,700	250,020	166,680
		(69,450*30)	1,666,800	1,833,480	1,916,820
	31일	2,152,950	430,590	258,350	172,240
		(69,450*31)	1,722,360	1,894,600	1,980,710
3-5 등급	30일	1,921,200	384,240	230,540	153,700
		(64,040*30)	1,536,960	1,690,660	1,767,500
	31일	1,985,240	397,050	238,230	158,820
		(64,040*31)	1,588,190	1,747,010	1,826,420

[첨부 3] 기관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비 급 여 현 황	비급여항목	금액(원)	내용	산출근거	비고	등록일
	식재료비	225,000	2,500×3(1일)=7,500원	30일기준		2019.07.22
	간식비	무료				2019.07.22
	상급침실	100,000		1개월		2019.07.22
	이미용비	무료	월(1회)			2019.07.22
	등외자	월정액	1,500,000	개인사정에 따라 상담 후 협의 가능		

제10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1조 (영업시간)

사업실시지역	전지역	
업무일 (업무시간)	수급자서비스	24시간 서비스 제공
	수급자상담시간	오전 11시 ~ 오후 18시
	입소신규상담시간	오전 09시 ~ 오후 18시

- 기관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